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3.2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등에서만 안전띠를 전좌석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면제는 대상자가 직접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재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설비·강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수강생 출석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교통안전교육강사 인장의 인영이 현재 출석확인 과 수강생 명단관리 등의 전산화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2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6호 중 “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을 “운영책임자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
2. 「병역법」 제7조에 따른 전역증(주특기, 전역일자 등)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군운전경력(군운전면허 발급원일, 운전차종, 적재중량, 탑승인원, 실 운전기간, 주행거리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의 일부면제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을 “운영책임자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1조(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삭 제>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6. ----- -----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신 설>

----- · 운영책임자의 인장의 인영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

2. 「병역법」 제7조에 따른 전역증(주특기, 전역일자 등)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군운전경력(군운전면허 발급연월일, 운전차종, 적재중량, 탑승인원, 실 운전기간, 주행거리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면
허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